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전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

참 조 매립시설 관리담당

제 목 부산그린파워㈜ 폭우 침출수 처리 공익사업 참여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회원사인 부산그린파워㈜가 장마폭우로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등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 10월 정례회의에서 협회 정관 제4조(사업)에 의거 상기 회원사의 침출수를 공익사업 차원에서 회원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처리 기간을 앞당겨 주민들의 고통해소에 일조키로 하였습니다.

3. 우리 민간 매립업계 공익의지의 일환이기도한 금번 사업에 회원사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며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20.10.16(금) 까지 귀 사의 참여가능 여부와 참여가능량 등을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재해폐기물 공익사업 추진계획(안) 1부.

2. 재해폐기물 공익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

한국 산업 폐기물 매립협회장



담 당 박 성 국 대 리 김 정 훈 기술지원팀장 한 인 성 상 무 장 기 석 부회장 김 상 배 회 장 이 민 석

협 조 시 행 한매협 2020 - 55호 (2020. 10. 13)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iwl.or.kr

전 화 02-718-7900 전 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재해폐기물 공익사업 추진계획[안]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20.10.13)

1 개 요

- '20년 하절기 장마·폭우로 다량의 우수가 회원사 폐기물 매립장에 유입되어 발생된 침출수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협회정관 제4조(공익사업)에 의거 임시보관 되어있는 침출수를 조기 처리토록 전 회원사가 지원키로 협회 10월 정례회의에서 의결

2 공익사업 계획

가. 공익사업 대상

- 부산그린파워㈜ 사업장 임시 저류조 보관 침출수 약 2.9만톤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484로 58)

나. 공익사업 기간

- '20.11.31까지(1차)
※ 필요 시 2차 공익사업 실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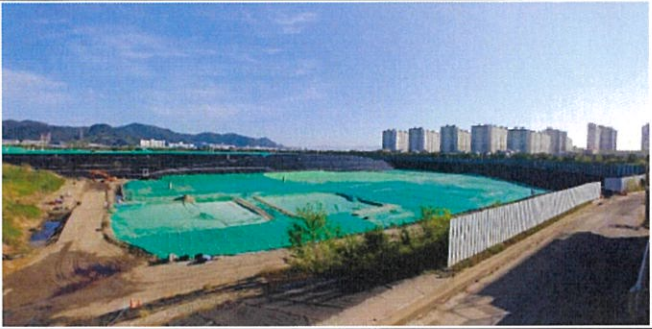
다. 침출수 간이 성분분석 결과

- 총 질소 2,500mg/L, 염분 농도 3%

라. 현재 상황

- 매립장 공구 내 침출수, 유량 조정조, 임시 저류조 보관 中
- 매립장 공구 내 침출수만 폐수처리업체 일 300톤 위탁 처리(135,000원/톤, VAT 별도) 중이며, 임시 저류조 약 2.9만톤은 보관 中(10월 12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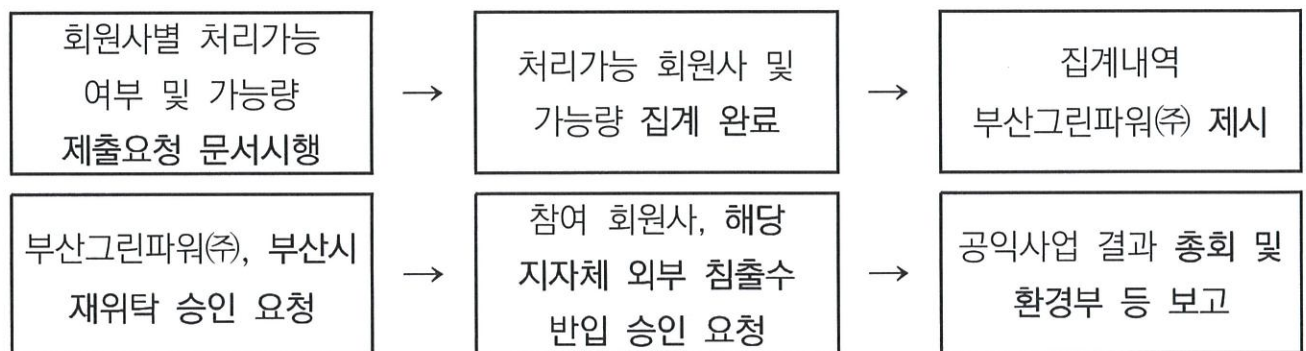
〈 부산그린파워(주) 현장 사진 〉

	
매립시설 상부	임시 저류조

마. 협회 추진 계획

- 공익사업 근거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침출수의 경우 다른 매립시설(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포함) 침출수 시설 활용 가능 결정한 환경부 유권해석(‘20.9.18)

○ 공익사업 절차



※ 부산시 재위탁 승인문서 근거 참여 회원사 해당 지자체 반입 승인 요청 후 부산그린파워(주)와 처리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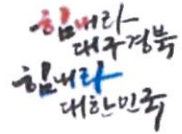
바.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공익사업 추진 경과 환경부·유관기관 제출 및 보도자료 발표
- 재해폐기물 업계 최초 공동처리 선례도출 동일 사안 발생 시 업계부담 완화
- 국가기반시설의 공익기여 의지 정부와 국민에 피력 계기

참 조 : 환경부,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알림 문서 1부.



환 경 부



수신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
(경유)

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알림

1. 한매협2020-48호(2020.9.10.)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개요) 폭우로 인해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되었으며, 부패로 인한 악취 민원 등이 발생되고 있어 폐수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음. 그럼에도 발생 침출수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에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활용 필요
- (질의요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인근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포함)을 활용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 (협회의 의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타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동 침출수는 인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

-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인허가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다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침출수 이송/위탁처리 가능 여부 및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끝.

환 경 부 장 관



주무관

박성수

환경사무관

정지민

과장

전달 2020. 9. 18.

문제원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5451

(2020. 9. 1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9

팩스번호 044-201-7376

/ pss1112@me.go.kr

/ 비공개(5)

재해폐기물 공익사업 참여 신청서

처리가능 여부 (O, X)	
처리가능량 (톤/일)	

위와 같이 「재해폐기물 공익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10. .

업 체 명 :

담 당 자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귀중